

2021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식회사 한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24 조의 2 에 따라 당사 지배구조에 관하여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 내역은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공시대상기간)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I. 개요	3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4
1. 기업지배구조 정책	4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4
2) 지배구조 특징	5
3) 조직도	6
2. 주주	7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7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20
3. 이사회	27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27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36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48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54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56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62
4. 감사기구	67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67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76
5. 기타 주요 사항	81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82

I. 개요

1. 기업명 : (주)한샘

2. 작성 담당자 : (정) 박중현 이사 (투자금융부 부서장)
 전화번호 : 02-6470-4699
 이메일 : parkjh0005@hanssem.com

(부) 백현국 대리 (투자금융부 투자금융팀)
 전화번호 : 02-6470-3897
 이메일 : baekhg@hanssem.com

3. 작성기준일 : 2021. 12. 31.

※ 본 문서의 '공시대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공시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 작성기준일 이후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된 결과를 별도로 기재하였습니다.

4. 기업개요

최대주주등 ¹	하임 유한회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28.35%
		소액주주 지분율	36.03%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홈리모델링/ 홈퍼니싱 아이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연결 매출액	22,312	20,675	16,984
연결 영업이익	693	931	558
연결 계속사업이익	572	668	427
연결 당기순이익	572	668	427
연결 자산총액	12,464	12,295	12,026
별도 자산총액	10,799	10,515	10,242

¹ 2022년 3월 31일 분기보고서 기준임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 기업지배구조 정책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주거공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의 구현을 위해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내규의 전문을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의 수립 및 운영은 해당 사규에 명시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이사회 규정 및 관련 사규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경영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구분하여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경영진의 업무집행권에 관한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0% 이상(이사 7명 중 3명)으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성 원칙’ 하에서 사외이사가 위원의 4분의 3를 구성하고 있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각각 재무 및 경영기획 전문가, 리스크 관리 전문가, 유통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인적 배경과 전문성을 토대로 이사회 부의 안전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들이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사회 사무국 및 관련 부서를 통하여 이사회 개최 전 이사에 대한 사전보고를 실시하고 안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지배구조 특징

가) 이사회 구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총원 7명 중 사외이사를 3명(전체 대비 43%)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업무집행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4명 중 3명의 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6개로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령상에 규정된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부가하여 각 위원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법적 의무사항의 승인 및 보고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고의 보고, 외부감사인의 감사현황 보고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ESG 위원회는 2021년 5월 7일 종전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재무 및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ESG에 관한 사항 전반까지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회 역할을 확대함에 따라 명칭을 ESG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보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는 경영투명성 강화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3) 지배구조 현황(보고서 제출일 기준)

회의체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위원장	주요 역할
이사회	3/7	이해준 (기타비상무이사)	-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감사위원회	3/3	차재연 (사외이사)	-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 수행
ESG 위원회	1/2	최춘석 (사외이사)	-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 수립 - ESG 중장기 목표 설정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보상 위원회	1/2	김상택 (사외이사)	- 임직원에 대한 보상 제도 관련 사항 심의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3/4	김상택 (사외이사)	- 사외이사 선임 원칙의 수립, 점검, 보완 -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내부거래 위원회	1/2	차재연 (사외이사)	- 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 거래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내부거래책임자의 임면 - 기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투자 심의위원회	1/2	김상택 (사외이사)	- 200 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 5% 미만 투자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경영상 중요 투자 항목

2. 주주

(핵심원칙 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한 설명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2020 년 1 월 1 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총 3 회의 정기주주총회 및 1 회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2020 년 1 월 1 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2 주전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고하고, 의결권 있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도 위임장을 게재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이후 해당 결과에 대해서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내역]

(기준일 : 2020. 1. 1. ~ 2022. 5. 31.)

구분	제 49 기 정기주주총회	제 49 기 임시주주총회	제 48 기 정기주주총회	제 47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2. 2. 24.	2021. 11. 22.	2021. 2. 26.	2020. 2. 28.
소집공고일	2022. 3. 8.	2021. 11. 23.	2021. 3. 4.	2020. 3. 5.
주주총회개최일	2022. 3. 23.	2021. 12. 13.	2021. 3. 19.	2020. 3. 20.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2 주전	주총 2 주전	주총 2 주전	주총 2 주전
개최장소/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 (한샘 상암사옥) 2 층 대강당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홈페이지 공고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통지			
세 부 사 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7명 중 1명 출석	8명 중 4명 출석	8명 중 8명 출석	8명 중 8명 출석
	감사위원 출석여부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3명 출석	3명 중 3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내용	회사의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함			

나. 주주총회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설명

당사는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 주전 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i)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는지 여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거래소가 주관한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8년 2월 5일부터 새로이 구축된 제도로서, 당사는 제도 시행 첫해와 2022년에 해당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지정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 2021년은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당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과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여부 내역 등]

(기준일 : 2020. 1. 1. ~ 2022. 5. 31.)

구분	제 49 기 주주총회	제 48 기 주주총회	제 47 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2. 3. 25.(금) 2022. 3. 30.(수) 2022. 3. 31.(목)	2021. 3. 19.(금) 2021. 3. 26.(금) 2021. 3. 30.(화) 2021. 3. 31.(수)	2020. 3. 20.(금) 2020. 3. 25.(수) 2020. 3. 26.(목) 2020. 3. 27.(금) 2020. 3. 30.(월)
정기주주총회일	2022. 3. 23.(수)	2021. 3. 19.(금)	2020. 3. 20.(금)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
서면투표 실시여부	예	예	예
전자투표 실시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예	예

(ii)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법 제 368 조의 3 은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는 정관 제 30 조 제 2 항에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하여 서면투표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2 년 2 월 24 일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 년 제 49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면투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DART(<http://dart.fss.or.kr>)에 및 홈페이지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위임장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https://company.hanssem.com/investment_info/public_info/regular.do)

(iii)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 안건별 세부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 등

[최근 1 년간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기준일 : 2021. 1. 1. ~ 2022. 5. 31.)

정기		제 49 기 정기주주총회			2022. 3. 23.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²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³	찬성주식수 (B) ⁴ (비율, %)
						반대·기권 주식수(C) ⁵ (비율, %)
제 1 호 의안	보통	제 49 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16,753,628	12,177,428	11,984,398 (98.4%)
						193,030 (1.6%)
제 2 호 의안	보통	이익배당 지급의 건	가결	16,753,628	12,177,428	12,112,550 (99.5%)
						64,878 (0.5%)
제 3 호 의안	보통	신규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주주제안 후보 이상훈)	부결	16,753,628	12,177,428	4,781,528 (39.3%)
						7,396,240 (60.7%)
제 4 호 의안 ⁶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주주제안 후보 이상훈)	부결	-	-	-
제 5 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6,753,628	12,177,768	10,161,909 (83.4%)

²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³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⁴ 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⁵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⁶ 제 4 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제 3 호 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2,015,859 (16.6%)
제 6 호의안	보통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가결	16,753,628	12,177,768	11,936,480 (98.0%)
						241,288 (2.0%)

임시		제 49기 임시주주총회			2021. 12. 13.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⁷	㉠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⁸	찬성주식수(B) ⁹ (비율, %)
						반대·기권 주식수(C) ¹⁰ (비율, %)
제 1 호 의안 : 이사 선임 의 건	보통	제 1-1 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이해준	가결	16,963,255	12,199,040	9,903,618 (81.2%)
						2,295,422 (18.8%)
		제 1-2 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송인준	가결	16,963,255	12,199,040	9,861,149 (80.8%)
						2,337,891 (19.2%)
		제 1-3 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김정균	가결	16,963,255	12,199,040	9,902,244 (81.2%)
					2,296,796 (18.8%)	
		제 1-4 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박진우	가결	16,963,255	12,199,040	9,902,205 (81.2%)
						2,296,835 (18.8%)
		제 1-5 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가결	16,963,255	12,199,040	9,925,127 (81.4%)

⁷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⁸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⁹ 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¹⁰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김상택				2,273,913 (18.6%)
		제 1-6 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최춘석	가결	16,963,255	12,177,428	7,845,788 (64.3%) 3,518,839 (20.7%)
제 2 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차재연	가결	9,906,110	5,253,031	4,385,495 (83.5%) 867,536 (16.5%)
제 3 호 의안	보통	제 3-1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외이사 김상택	가결	9,906,110	5,253,378	4,643,162 (88.4%) 610,216 (11.6%)
		제 3-2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외이사 최춘석	가결	9,906,110	5,253,378	3,869,657 (73.7%) 2,512,135 (26.3%)
제 4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특별	제 4-1 호 의안 : 단순 오자수정 및 법 개정 등 반영을 위한 단순표현 수정	가결	16,963,255	12,199,387	12,137,560 (99.5%) 61,827 (0.5%)
		제 4-2 호 의안 : 배당 기산일에 관한 상법 개정 반영	가결	16,963,255	12,199,387	12,137,560 (99.5%) 61,827 (0.5%)
		제 4-3 호 의안 : 전자등록에 따른 개정	가결	16,963,255	12,199,387	12,137,560 (99.5%) 61,827 (0.5%)
		제 4-4 호 의안 :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	가결	16,963,255	12,199,387	12,136,699 (99.5%) 62,688 (0.5%)
		제 4-5 호 의안 : 이사 정원 상한 변경	가결	16,963,255	12,199,387	12,137,847 (99.5%) 61,540

						(0.5%)
		제 4-6 호 의안 : 분기배당 조항 신설	가결	16,963,255	12,199,387	12,141,477 (99.5%)
						57,910 (0.5%)

정기		제 48 기 정기주주총회			2021. 3. 18.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¹¹	①종 의결권 행사 주식수(A) ¹²	찬성주식수(B) ¹³ (비율, %)
						반대·기권 주식수(C) ¹⁴ (비율, %)
제 1 호 의안	보통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16,963,255	10,667,363	9,840,409 (92.2%)
						826,954 (7.8%)
제 2 호 의안	보통	이익배당 지급의 건	가결	16,963,255	10,667,363	10,667,363 (100%)
						0 (0.0%)
제 3 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가결	16,963,255	10,667,363	10,558,167 (99.0%)
						109,196 (1.0%)
제 4 호 의안	보통	이사보수한 도선임의 건	가결	16,963,255	10,667,363	9,970,341 (93.5%)
						697,022 (6.5%)
제 5 호 의안	보통		가결	16,753,628	10,667,363	9,970,341 (93.5%)

¹¹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¹²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¹³ 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¹⁴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697,022 (6.5%)
제 6 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보통	제 6- 1 호의안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전재훈)	가결	9,884,209	5,235,735	3,215,648 (58.2%)
						2,307,569 (41.8%)
	보통	제 6- 2 호의안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의 건 (박종현)	가결	9,884,209	5,235,735	3,215,648 (58.2%)
						2,307,569 (41.8%)
	보통	제 6- 3 호의안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의 건 (최철진)	가결	9,884,209	5,235,735	2,928,166 (55.9%)
						2,307,569 (44.1%)
제 7 호 의안	특별	정관 변경의 건 - 감사위원회 설치, 목적사업 추가 등	가결	16,963,255	10,667,363	10,491,574 (98.4%)
						175,789 (1.6%)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전반에 관한 사항

상법 제 363 조의 2(주주제안권)에 따라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상법시행령 제 12 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주주제안절차에 있어서 제약은 없습니다. 주주제안권은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절차 및 내부기준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대해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내역]

(기준일 : 2020. 1. 1. ~ 2022. 5. 31.)

제안 일자	제안 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상황	가결여부	찬성률 (%)	반대율 (%)
2022. 1. 28.	TETON CAPITAL PARTNERS, L.P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49 기 정기주주총회	부결	39.3%	60.7%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2. 3. 23.) 안건 상정	자동폐기 ¹⁵	-	-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는 이사회 공정성 · 독립성 강화 목적으로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을 제안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 약 3 주 전인 2021. 11. 17.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공문이 회사에 접수되어 상법 제 36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주주제안기간(주주총회일 6 주 전)을 초과하여 주주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안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적절한 전문성 및 독립성 검증 절차를 이행할 시간 및 자료가 부족하고, 이미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검토가 완료되어 후보추천이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한편, 공시대상기간 직전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 내역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¹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나.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

상기와 같은 절차 등으로써 당사에서는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주주환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i)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당사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배당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 구현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의 제고를 지향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 57 조에 따라 금전과 주식 등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으며, 배당금은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익의 배당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당사는 제 49 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분기배당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관 제 57 조의 2 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월, 6 월 및 9 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 조의 3 제 2 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제 4 항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 실시 내역]

구분	주요내용
이사회 결의일	2022 년 5 월 12 일
배당기준일	2022 년 3 월 31 일
배당주식수	보통주 16,914,018 주
주당 배당금액(주당 액면배당율)	400 원(40%)
분기배당 한도	491,565,362,309 원
총 배당금액	6,765,607,200 원
배당지급일	2022 년 5 월 27 일

또한 당사는 2022년 11월 22일 공시를 통해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정책

- 2022년 1분기부터 분기배당 예정
- 최소 연간 배당성향(Dividend Payout Ratio) 50%로 상향
- 단, 연간 FCF(Free Cash Flow)가 당기순이익을 초과시, 배당성향 50% 초과 배당 가능

2) 자기주식 취득

- 경영진이 판단하는 적정 기업가치 이하에서는 상시적/탄력적 자기주식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 2021. 11. 22. 3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 결의
- 향후 300억원 수준에서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할 예정
- 자기주식 매입 규모는 회사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잠재적 투자(Capex) 집행 및 인수합병(M&A)에 따라 변동 가능

또한,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규모는 투자, 재무구조, 배당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의 자사주 매입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자사주 매입 내역]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제출일기준)
취득 기간	'20. 4. 21. ~ '20. 6. 24.	'21. 11. 29. ~ '22. 1. 17.	'22. 3. 28. ~ '22. 8. 12. (예정)
취득주식 총수(주)	370,139	325,406	740,740
취득가액 총액(억원)	300	300	500

(ii) 주주환원정책 등을 주주에게 안내하는 방식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4 조 및 제 6 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 4 조 등을 근거로 하여 배당, 자사주 등 주주환원정책과 관련 사항을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투자정보

홈페이지에도 연동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IR 활동과 투자자 미팅을 통하여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

상기와 같은 절차 등으로써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주주환원 전반에 관한 사항

(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

(기준일 : 2019. 1. 1. ~ 2022. 5. 31.)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액면가 (원)	주당 배당금 (원) ¹⁶	총 배당금 (억원)	시가 배당률 (%) ¹⁷	배당성향(%) ¹⁸	
								연결 기준	별도 기준
2021	12	보통주	없음	1,000	1,550	194	1.6	32.8	38.0
2020	12	보통주	없음	1,000	1,300	224	1.2	34.4	45.0
2019	12	보통주	없음	1,000	1,200	211	1.9	49.4	51.1

(i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 여부

¹⁶ 1주당 연도별 지급액 총액

¹⁷ 주주명부 폐쇄일 2 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

¹⁸ 연결기준 배당성향의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

당사는 2022년 5월 1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분기배당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주당배당금은 400 원이고 총 배당금은 68 억원입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당 등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앞으로도 배당정책에 관련된 여러 제언들을 경청하고 수용하여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주가치제고를 하여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 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00 주(1 주의 금액 : 1,000 원)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23,533,928 주입니다. 이 중 자기주식 7,137,747 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16,396,181 주이며, 상법상의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주식수는 16,396,181 주(발행주식 총수의 69.7%)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명식 우선주 발행내역이 없으며, 정관 제 8 조에 따라 당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종류주식이 없으므로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 또한 없습니다.

[주식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주식수(주) ¹⁹	발행주식수(주) ²⁰	발행비율 ²¹	비고
보통주	60,000,000	23,533,928	39.22%	자기주식수 7,137,747 주

나.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른 공평한 의결권 부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 27 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임을 명시하여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 주주와의 의사 소통에 대한 사항

(i)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등 개최 내역

¹⁹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²⁰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기준일 현재까지 감소(감자,이익 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²¹ 발행주식수/발행가능주식수*100(소수점 3 자리에서 반올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실적 정보를 모든 주주가 볼 수 있도록 매 분기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내용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기준일 : 2021. 1. 1. ~ 2022. 5. 31.)

일자	대상	형식	주요내용	비고
2021. 7. 23.	국내외 주요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콜	'21.2Q 실적 리뷰 및 전망 등	-
2021. 10. 22.	국내외 주요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콜	'21.3Q 실적 리뷰 및 전망 등	-
2022. 2. 8.	국내외 주요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콜	'21.4Q 실적 리뷰 및 전망 등	-
2022. 4. 15.	국내외 주요 애널리스트	오프라인 행사	신임 경영진 소개 및 중장기 전략방향공유	-
2022. 4. 29.	국내외 주요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콜	'22.1Q 실적 리뷰 및 전망 등	-

※ 당사는 위에 기술한 IR 외에도 투자자 요청시 방문 또는 비대면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DART(<http://dart.fss.or.kr>)에 IR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ii)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여부

공시 자료에 대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IR 담당자의 직통 연락망 및 이메일을 게시하여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 관련 정보는 DART(<http://dart.fss.or.kr>), KIND(<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용의 충실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여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ii) 외국인 주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자 연락처 공개 및 영문 공시 여부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문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영문 공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문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R 배포 자료 또한 영문 번역되어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회사 정보 접근성 또한 상당수준 보장되고 있습니다.

(iv) 공정공시 내역

당사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시에 재무 및 경영상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06. 12. 1.부 시행) 당사의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공정공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공시 내역]

(기준일 : 2021. 1. 1. ~ 2022. 5. 31.)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1. 2. 5.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0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 4. 20.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 7. 23.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 10. 22.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 11. 22.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
2022. 2. 8.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2. 4. 15.	장래사업 · 경영계획(공정공시)	회사의 비전 및 중장기 전략방향 공유
2022. 4. 29.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2년 1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v)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i)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1항은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의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점검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의 안건 외의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현황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ii)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자기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채무 잔액이 있는 관계기업 및 기타특수관계자]

(기준일 : 2021. 1. 1. ~ 2021. 12. 31.)

구분	당기말	전기말	비고
관계기업	Hanssem Inc.	Hanssem Inc.	(주)한샘넥서스의 관계기업
기타특수관계자	(주)휘찬산업	(주)휘찬산업	지배회사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겸직
	재단법인 태재연구재단 ²²	재단법인 태재연구재단	기타 특수관계자

²² 보고기간 중 사명을 한샘드뷰연구재단에서 재단법인 태재연구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의 내용]

(기준일 : 2021. 1. 1. ~ 2021. 12. 31., 단위 : 천원)

구분	회사명	당기말		전기말	
		채권	채무	채권	채무
관계기업	Hanssem Inc.	3,280,793	73,708	3,304,132	46,211
기타	(주)휘찬산업	517,823	-	-	21,776
특수관계자	태재재단	-	220	-	-
합계		3,798,616	73,928	3,304,132	67,987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기준일 : 2021. 1. 1. ~ 2021. 12. 31., 단위 : 천원)

구분	회사명	당기말		전기말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등	매입 등
관계기업	Hanssem Inc.	3,031,246	723,367	3,493,649	1,008,675
기타	(주)휘찬산업	591,024	9,226	6,270	68,105
특수관계자					
합계		3,622,270	732,592	3,499,919	1,076,780

(세부원칙 2- 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2022년 1월 4일자로 최대주주가 변경 완료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하여, 2021년 11월 22일 중장기 환원정책을 발표하면서 최소 배당성향 50% 및 분기배당 실시, 자기주식 약 1,100억원의 추가 매입을 통하여 회사의 명확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개최되는 주주총회 및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주주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대주주 조창걸 외 특수관계인 7인이 2021년 7월 29일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 및 당사 경영권 양도에 관하여 IMM 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당사의 최대주주 조창걸외 특수관계인 7인은 2021년 10월 25일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 및 당사 경영권 양도에 관하여 아이엠엠로즈골드 4 사모투자 합자회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당사의 최대주주 조창걸외 특수관계인 7인은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 및 당사 경영권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종결합의서를 체결하고 주식매매계약 및 거래종결합의서상 매수인의 지위 및 권리 의무 일체가 매수인의 승계인들에게 이전되었습니다.

- 다 음 -

- 1) 매도인 : 최대주주 조창걸외 특수관계인 7인
- 2) 매수인 : 하임 유한회사, 하임 1호 유한회사 및 하임 2호 유한회사
- 3) 대상주식 : (주)한샘 보통주 6,521,509주 (발행주식의 약 27.7%)
조창걸 : 보통주 3,635,180주 (지분율 : 15.4%)
특수관계인 7인 : 보통주 2,886,329주 (지분율 : 12.3%)
- 4) 매매대금 : 1,441,253,489,000원
- 5) 거래종결일 : 2022년 3월 31일

거래종결일 중 5,521,509주에 대한 거래종결은 2022년 1월 4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종결과 함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1,000,000주에 대한 거래종결은 2022년 3월 31일부로, 주식매매계약 및 거래종결합의서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매수인은 거래된 내용에 따라,

2022년 3월 23일 개최된 제 4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상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아 의결권을 행사 하였습니다.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2021년 11월 22일 이사회 의결 및 공정공시를 다음과 같이 통해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 음 -

1)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 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적극적인 주주환원 시행 예정

2) 배당정책

- 2022년 1분기부터 분기배당 예정

- 최소 연간 배당성향(Dividend Payout Ratio) 50%로 상향

- 단, 연간 FCF(Free Cash Flow)가 당기순이익을 초과시, 배당성향 50% 초과 배당 가능

3) 자기주식 취득

- 경영진이 판단하는 적정 기업가치 이하에서는 상시적/탄력적 자기주식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 2021년 11월 22일 3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 결의

- 향후 300억원 수준에서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할 예정

- 자기주식 매입 규모는 회사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잠재적 투자(Capex) 집행 및 인수합병(M&A)에 따라 변동 가능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하여 정책을 검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사회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 -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에 대한 설명

당사는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지원 담당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회 지원 부서는 임직원 2 명이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질의응답, 추가사항 지원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사회 운영방식 논의, 지배구조 제·개정 관련 논의 등을 이사회와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i)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심의·의결사항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관계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지배구조, 중요 투자결정, 회계 재무 및 인사 관련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이사회 규정 제 11 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권한	의결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주주총회 소집권자 (3) 주주총회 의장(대표집행임원이 복수인 경우)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5) 영업보고서의 승인 (6) 재무제표의 승인 (7) 정관의 변경 (8) 자본의 감소 (9)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p>(10)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p> <p>(11)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p> <p>(12) 이사,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p> <p>(13) 주식의 액면미달발행</p> <p>(14)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p> <p>(15)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p> <p>(1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p> <p>(17) 이사의 보수 한도 결정</p> <p>(18)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p> <p>(19) 법정준비금의 감액</p> <p>(20) 주주명부 기준일의 설정</p> <p>(21)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p>
<p>2. 경영 및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1)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p> <p>(2)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기존 연간 사업계획 또는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범위의 연간 사업계획 또는 예산 변경</p> <p>(3)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p> <p>(4)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또는 폐지</p> <p>(5)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p> <p>(6)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p> <p>(7)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p> <p>(8) 회사가 보유한 기술, 노하우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용허락, 매각, 담보제공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거래</p> <p>(9)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p>
<p>3.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p>	<p>(1) 신주의 발행</p> <p>(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사채발행의 위임</p> <p>(3) 준비금의 자본전입</p> <p>(4) 전환사채의 발행</p> <p>(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6) 발행주식총수의 3% 이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p> <p>(7) 결손의 처분</p> <p>(8) 자산재평가 실시</p> <p>(9) 내부회계관리 운영 보고</p> <p>(10)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p> <p>(11) 정기 또는 분기배당의 결정</p> <p>(12) 기타 재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p>

4.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의 전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일부 정지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공급계약계약 또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3)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의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4)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 및 파기 (5)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의 생산활동의 중단이나 폐업
5.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 결정을 포함) (2) 자기주식의 소각 (3) 상법 제 329 조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 (4)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5)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 상장결정 (6)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해외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에 대한 정기, 수시 신고, 공시 또는 보고서 그 밖의 서류의 제출 (7)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상장폐지 결정,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조치 (8) 주권의 상장폐지
6.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자본의 10% 이상 자금의 차입(단기차입금의 증가를 포함) (2) 자기자본의 5% 이상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또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보증 (3) 자기자본의 5% 이상 자금의 대여 또는 해당 금액 이상의 선급금 지급, 가지급금 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 등 신용의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 (4) 자기자본의 5% 이상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7.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자본의 5% 이상 타법인(자회사를 포함) 주식, 채권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및 처분(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포함) (2)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5% 이상인 유형자산(임대 목적 부동산 포함)의 취득 및 처분 (3)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자본적 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시설투자·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8. 이사 및 집행임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법 제 398 조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2) 상법 제 397 조의 2 의 회사의 기회의 이용에 대한 승인 (3)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선임 조건의 결정 및 변경 (4)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타회사의 임원 겸임 승인 (5)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집행임원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단, 감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단,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10)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등(단, 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9. 기타 사항	(1)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중요한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 취하, 화해 또는 인낙 (2) 주권의 액면분할이나 병합 (3) 실권 주식의 처리 (4)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5) 기타 법령상 필요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집행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 규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 (2)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ii)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의 존재 여부 등

당사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iii) 이사회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1)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집행임원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나 대표집행임원의 의결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이사회 규정을 바탕으로 경영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 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과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

(i)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당사는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대표집행임원 선임을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 집행임원, 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집행임원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인사 담당 부서 주관 하에 체계적 승계정책 수립을 위하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교화된 평가체계를 통해 성과 및 역량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함께 역량 있는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는 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주도할 최고경영자 후보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ii)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승계 정책 계획(案) 중 최고 경영자 후보군은 직급 기준과 성과 및 역량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후보군에는 사외 고급과정, 다면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리더십 코칭, 워크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iii) 공시대상기간동안 교육 현황

당사는 후보군 선정하여 후보군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i) 리스크의 인식,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 또는 승인 사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사항인 경영전략 및 M&A, 주주 및 주주총회 사항,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사항, 규정에 관한 사항, 경영진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부의 사항으로 규정하여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준법 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등을 이사회에서 보고 받음으로써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1) 준법경영

당사는 2016 년 2 월 이사회에서 준법지원인(김룡 변호사)을 선임하고,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준법지원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9. 2. 23. 및 2022. 4. 15. 에 두 차례 걸쳐 준법통제기준을 개정하였고, 2020. 9. 19. 준법지원인(한승훈 변호사)을 변경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준법통제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업무와 임직원에게 대한 준법 점검 및 위법 가능성이 있는 회사 내부 기준과 행위에 대한 개선활동을 수행합니다. 더하여, 한샘윤리현장을 마련하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샘윤리현장은 당사의 전 임직원이 사용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샘준법지침서 : 내부 준법통제기준

한샘윤리규범 : 하기 홈페이지 링크 참조

(https://company.hanssem.com/company_info/management_policy/ethical_regulation.do)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		
준법지원인	성명	한승훈
	나이	만 40 세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현직	한샘 경영지원본부 윤리경영실 법무팀팀장(20. 6. ~)
	주요경력	2008. 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2. 4. ~ 2015. 3. 법무부 국가송무과 법무관 2015. 4. ~ 2020. 6.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2020. 6. ~ 현재 (주)한샘 컴플라이언스팀장
이사회 결의일	2020. 9. 19. (임기 : 3 년)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준법지원인 활동내용 및 처리 결과]

점검일시	주요점검내용	점검 및 처리결과
2021. 1.	사외이사 선임 관련 준법 점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일부 개선 필요사항은 사내 정책 등에 따라 보완함
2021. 2.	이사회 및 주총 결의사항 검토	
2021. 3.	신규계약 등 위법성 여부 검토	
2021. 4.	거래구조 변화 관련 계약 점검	
2021. 5.	제반 위원회 설치 및 관리	
2021. 6.	대리점 등 유통계약 준법 점검	
2021. 7.	대리점 등 유통계약 준법 점검	
2021. 8.	거래구조 변화 관련 계약 점검	
2021. 9.	전사 리스크 점검 및 관리체계 검토	
2021. 10.	소비자 대상 계약내용 등 점검	
2021. 11.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검토	
2021. 12.	계열사 거래구조, 계약 등 점검	
2022. 1.	이사회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관련 점검	
2022. 2.	대리점 등 유통계약, 공정거래 관련 점검	
2022. 3.	정기 주주총회 개최 관련 점검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법무팀	8	팀장변호사 1 명, 책임변호사 1 명, 변호사 2 명, 차장 1 명, 과장 1 명, 대리 1 명, 사원 1 명	1. 계약검토 및 법률자문 2. 공정거래 이슈 점검 및 대응 3. 이사회, 주주총회 등 지배구조 점검 4. 소비자 대상 유통계약 등 점검 5. 준법경영교육

(2)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운영현황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파트는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내부회계관리규정 제4조)
2.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내부회계관리규정 제5조)
3.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 및 내부검증 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내부회계관리규정 제6조)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내부회계관리규정 제7조)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내부회계관리규정 제8조)
6. 대표집행임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운영책임 및 제반 사항(내부회계관리규정 제9조)
7.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및 제반 사항(내부회계관리규정 제10조)
8.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내부회계관리규정 제10조의2)
9. 감사위원회의 역할(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
10. 내부회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
11.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내부회계관리규정 제13조)
1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관한 사항(내부회계관리규정 제14조, 제15조)

1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 기준(내부회계관리규정 제16조)
14. 대표집행임원의 운영실태 보고의 기준 및 절차(내부회계관리규정 제17조)
15. 감사위원회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평가보고서 비치, 평가결과 공시(내부회계관리규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
16. 관련 규정 위반의 조치 및 대처방안, 내부신고제도의 운영(내부회계관리규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
17.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내부회계관리규정 제24조)

(3)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및 운영현황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근거 법령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기한 내 신속한 공시를 통해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공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88 조에 따라, 공시책임자 1 인과 공시담당자 2 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정기교육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및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시 및 관련 제도 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하며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업무는 당사 투자금융부 투자금융팀 IR 파트가 주관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의 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IR 파트로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 기준과 공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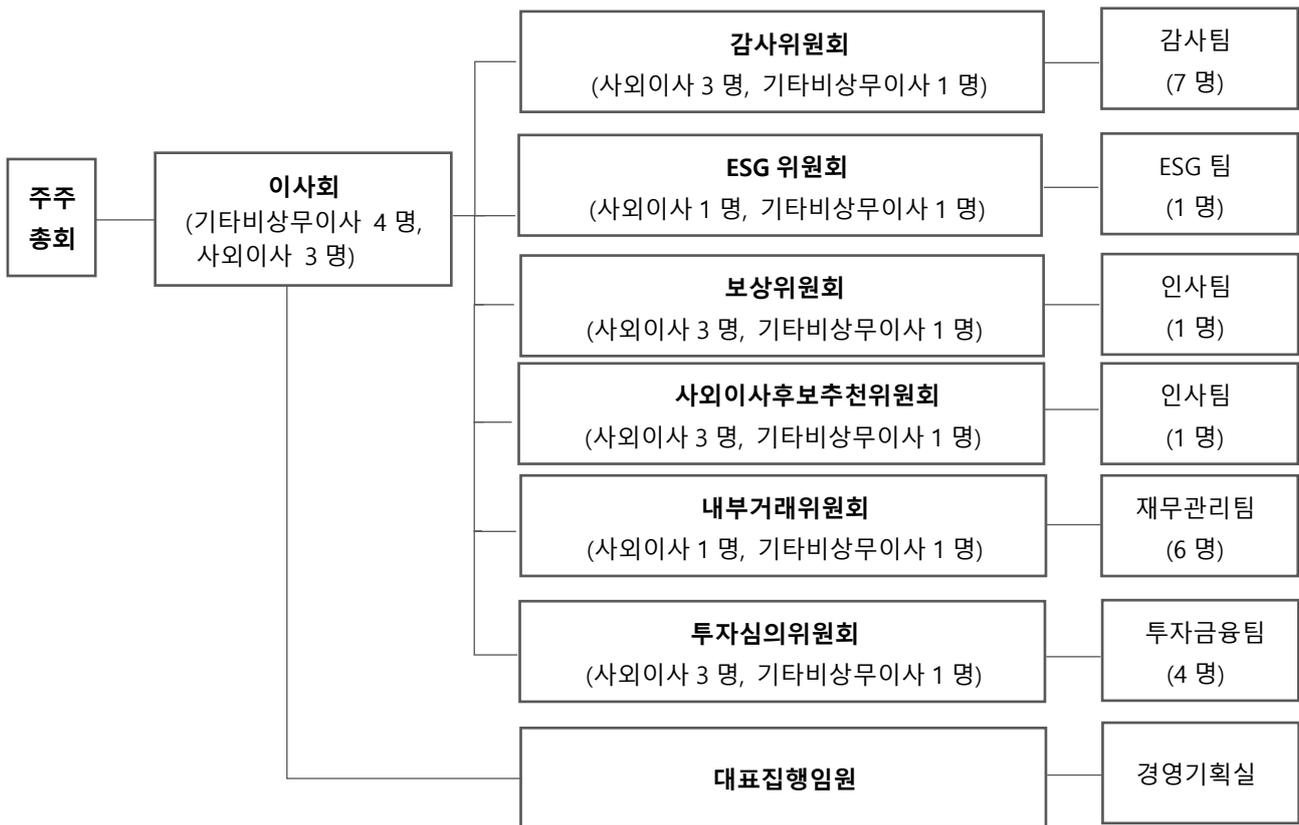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

(i)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지원부서 구성현황



(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 등

[이사회 구성 현황]

(기준일 : 2022. 5. 31.)

구분	성명	성별	직책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기타 비상무이사	이해준	남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	-	경영 전반	- 現) IMM Private Equity 투자부문 대표 - 前) Fortress Investment Group 뉴욕 - CFA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기타 비상무이사	송인준	남	-	-	-	경영 전반	- 現) IMM Private Equity 대표이사 - 한국공인회계사
기타 비상무이사	김정균	남	내부거래위원회 , 보상위원회 위원	-	-	경영 전반	- 現) IMM Private Equity 부사장 - 前) 삼성 KPMG
기타 비상무이사	박진우	남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	-	경영 전반	- 現) IMM Private Equity 이사 - 前)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홍콩
사외이사	차재연	여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2022. 1. 4.	2025. 3. 정기주주 총회까지	감사	- 前) KT 에스테이트 경영기획총괄 부사장(CFO/등기이사) - 前) BC 카드 경영기획총괄 전무(CFO) - 前) KT 비서실 재무담당/그룹전략담당 상무
사외이사	김상택	남	보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2022. 1. 4.	2025. 3. 정기주주 총회까지	감사	- 現) 서울보증보험 상임경영고문 - 前) 아시아보증, 신용보험협회 (AGCIA) 협회장 - 前)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사장
사외이사	최춘석	남	ESG 위원회 위원장	2022. 1. 4.	2025. 3. 정기주주 총회까지	감사	- 前) 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이사 - 前) 롯데마트 상품본부장, 판매본부장

(i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內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

(기준일 : 2022. 5. 31.)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역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총 3 인) (A)	위원장	사외이사	차재연	여	D, E	1.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
	위원	사외이사	김상택	남	C, D, F	
	위원	사외이사	최춘석	남	B, D	
ESG 위원회 (총 2 인) (B)	위원장	사외이사	최춘석	남	A, D	1.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2.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	기타 비상무이사	박진우	남	F	
보상위원회 (총 2 인) (C)	위원장	사외이사	김상택	남	A, D, F	1.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감사 보수 한도 2. 등기 및 미등기임원 등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3. 기타 임직원에게 대한 보상 제도 관련 사항
	위원	기타 비상무이사	김정균	남	E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총 4 인) (D)	위원장	사외이사	김상택	남	A, C, F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 점검, 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위원	사외이사	차재연	여	A, E	
	위원	사외이사	최춘석	남	A, B	
	위원	기타 비상무이사	이해준	남	-	

내부거래위원회 (총 2 인) (E)	위원장	사외이사	차재연	여	A, D	1. 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 정책 2. 거래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내부거래책임자의 임면 4. 기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위원	기타 비상무이사	김정균	남	C	
투자심의위원회 (총 2 인) (F)	위원장	사외이사	김상택	남	A, D	1. 100 억 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 투자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경영상 중요 투자 항목
	위원	기타 비상무이사	박진우	남	B	

(iv) 사외이사수, 비율, 연임 현황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 33 조에 따라 이사는 3 인 이상 10 인 이하로 구성됩니다. 상법 제 383 조에 따라 3 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는 회사의 규모, 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 10 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7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3 인(43%)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중 2021 년 제 49 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차재연, 김상택, 최준석 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는 차재연, 김상택, 최준석이며 연임 중인 이사는 없습니다.

(v)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

당사는 2021 년 12 월 13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의결을 통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집행임원이 분리됨으로써,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또한 대표집행임원과 이사회 의장은 분리된 상태입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구성되었는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지

상기 서술된 바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있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 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현황

(i)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정책의 마련 여부 및 이사회 구성원별 구체적 현황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전문성과 개인적 역량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경영관리감독, 재무 및 경영기획, 리스크 관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역량 평가 및 이사 선임에 있어 연령, 성별, 학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이사의 선임 배경]

(기준일 : 2022. 5. 31.)

성명	전문 분야	선임 배경
이해준 (기타비상무이사)	경영관리감독	펜실베니아 로스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모건스탠리 Global Capital Markets 부사장 역임 등 경영전반/법률분야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
송인준 (기타비상무이사)	경영관리감독	한국공인회계사이자 (現)IMM 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로 충분한 경영총괄 경험을 갖추고 있어, 당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
김정균 (기타비상무이사)	경영관리감독	London Business School 를 졸업하고 CFA Charterholder로서 삼정 KPMG 에서 역량을 갖추고 (現)IMM 프라이빗에쿼티 임원으로서 경영전반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어, 당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

박진우 (기타비상무이사)	경영관리감독	CFA Charterholder 로써 Macquarie Securities Korea 및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홍콩에서 쌓은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전략 및 기업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
차재연 (사외이사)	재무 및 경영기획	재무 및 경영기획 총괄 임원을 역임한 자로서, 당사에 재무 및 회계분야 전략 수립에 기여해 줄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경영관리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택 (사외이사)	리스크 관리	서울보증보험 전 대표이사로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 및 재무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춘석 (사외이사)	경영전반	유통기업 대표이사로서의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유통관리 시스템의 경영효율화에 기여해 줄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자들과의 사업시너지 창출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i)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기준일 : 2020. 1. 1. ~ 2022. 5. 31.)

구분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재직 여부
기타 비상무이사	이해준	2022. 1. 4.	2025. 1. 3.	-	-	재직
	송인준	2022. 1. 4.	2025. 1. 3.	-	-	재직
	김정균	2022. 1. 4.	2025. 1. 3.	-	-	재직
	박진우	2022. 1. 4.	2025. 1. 3.	-	-	재직
사외이사	차재연	2022. 1. 4.	2025. 1. 3.	-	-	재직
	김상택	2022. 1. 4.	2025. 1. 3.	-	-	재직
	최춘석	2022. 1. 4.	2025. 1. 3.	-	-	재직
	신태균	2020. 3. 20.	2023. 3. 19.	2022. 1. 4.	사임	퇴직
	전재훈	2021. 3. 19.	2024. 3. 18.	2022. 1. 4.	사임	퇴직
	박종현	2021. 3. 19.	2024. 3. 18.	2022. 1. 4.	사임	퇴직
	정일영	2017. 3. 17.	2023. 3. 19.	2021. 3. 19.	사임	퇴직

사내이사	조창결	2003. 3. 14.	2024. 3. 18.	2022. 1. 4.	사임	퇴직
	강승수	2010. 3. 26.	2022. 3. 22.	2022. 1. 4.	사임	퇴직
	이영식	2010. 3. 26.	2022. 3. 22.	2022. 1. 4.	사임	재직
	안흥국	2016. 3. 18.	2025. 2. 7.	2022. 2. 8.	사임	재직
	최철진	2020. 3. 20.	2022. 3. 19.	2022. 1. 4.	사임	퇴직

나.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에 관한 설명

당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의 역량 평가 및 이사 선임에 있어 연령, 성별, 학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경쟁력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여부, 동 위원회의 구성현황(사외이사 비율 포함)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설명

당사의 이사는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는 후보군 중에서 상법 제 382 조 제 3 항, 제 542 조의 8 제 2 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실무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당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유관부서와의 인터뷰 및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증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로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기타비상무이사 1 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7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세부원칙 8-② 다.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과 개별이사의 출석률”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 이사로서 회사성장에 실질적 기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

(i)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 제공의 구체성 및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주총회 약 2 주 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정관 제 34 조 제 3 항에 따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정리하여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공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분기별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임 여부의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기준일 : 2021. 1. 1. ~ 2022. 5. 31.)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사외이사 후보		정보제공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22. 3. 15. (주총 14 일전)	2022. 3. 23.	사외	이상훈	1. 후보자 생년월일 및 임기 2.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3. 주요 경력(현직포함) 4. 겸직현황 5. 독립성(이해관계)확인 내용 6. 추천인	-
2021. 11. 23. (주총 20 일전)	2021. 12. 13.	사외	차재연	1. 후보자 생년월일 및 임기 2. 주요 경력(현직포함) 3. 겸직현황 4. 독립성(이해관계)확인 내용 5. 추천인	-
		사외	김상택		
		사외	최춘석		
		비상무	이해준		
		비상무	송인준		
		비상무	김정균		
		비상무	박진우		

2021. 3. 4. (주총 15 일전)	2021. 3. 19.	사외	박종현	1. 후보자 생년월일 및 임기 2. 주요 경력(현직포함) 3. 겸직현황 4. 독립성(이해관계)확인 내용 5. 추천인	-
		사외	전재훈		

(ii)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사내이사 포함)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당사 사업보고서상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사외이사에 한하여 과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출석율,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및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당사는 정관 제 35 조에 의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소수주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로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계획이 없습니다.

라.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

당사는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2 주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등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기준일 : 2022. 5. 31.)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김진태	남	대표집행임원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이해준	남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관리감독(이사회 의장)
송인준	남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관리감독
김정균	남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관리감독
박진우	남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관리감독
차재연	여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재무 및 경영기획
김상택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리스크 관리 및 경영전반
최춘석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전반
안흥국	남	집행임원	등기임원	상근	홈모델링사업부문장
박해웅	남	집행임원	등기임원	상근	DT 부문장
이영식	남	부회장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전반
김덕신	남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리하우스사업본부장
박성훈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장
최성원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업문화실장
김용하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INT 사업본부장
김준현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홍보실장
조용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SCM 본부장
이은지	여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CX 관리본부장
신희송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IT 본부장
김수영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IT 본부 전문임원
이승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소비자보호실장

김홍광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한샘 담당임원
김윤희	여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R&D 본부장
이창욱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북경/소주법인부서장
송기룡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특판사업본부장
손영동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기획실장
김종필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O2O 영업부서장
장우순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건재구매부서장
김룡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윤리경영실장
이희철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INT 구매부서장
김근서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RH 영업 1 부서장
이향호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통합물류사업부서장
최봉규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RH 영업 2 부서장
정윤환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회계부서장
이승기	남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홍보실 임원
남윤호	남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제조사업부서장
최지연	여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침실상품부서장
유정연	여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리모델링상품부서장
박원덕	남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건재유통팀부서장
이정목	남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RH 지원부서장
김만용	남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창호팀부서장
김경목	남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소싱개발기획부서장
이수열	남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INT 대리점영업부서장
김종훈	남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INT 지원부서장
최태근	남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정보혁신부서장
이상훈	남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B2B 플랫폼사업부서장
박중현	남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투자금융부서장
고영남	남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한샘연구소실장
곽상훈	남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ESG 지원부서장
김창훈	남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온라인사업본부장

나.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한 설명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성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회사의 윤리규범 등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당사 윤리경영실을 운영함으로써 징계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동일 유형의 사고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여부 및 그 현황에 대한 설명

상기 나.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절차 등을 운영함으로써 당사에서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여부 및 도입한 경우 그 배경 및 이유, 관련규정, 운영 현황

당사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통해 이사회와 집행임원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성을 보장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전원 사외이사 선임 등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투명한 경영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주주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올바르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상법을
준용하여 사외이사의 주요 결격사유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에서 확정할 때 해당
후보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검토 과정은 사전에 작성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후보자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외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의 이해관계 유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후보자일 경우 사외이사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면 후보 본인으로부터 사외이사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확인 받고
있어 독립성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및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i)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 포함)에 재직할 경력이 있는지 여부

당사 또는 계열회사에 재직할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ii) 사외이사와 당사 사이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 또는 계열회사 중 사외이사와 거래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iii)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사이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와 기업·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차재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상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최춘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iv) 기업이 상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내부규정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상법 제 382 조 및 제 542 조의 8, 정관 제 35 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관련 공시 시 법적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사외이사 자격 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적 자격요건 외에 여러 평가항목을 통해 독립성,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인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각각의 재직기간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6 년(계열회사 포함 9 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 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있는지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당사에 선임되기 전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 한 경력이 없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당사 사외이사 중 재직기간이 6 년을 초과하여 장기재직하고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다. 사외이사가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상기 가. 및 나. 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회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 거래 등 중대한 이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정해집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전반

(i)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

당사는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4 조 제 5 항에 규정된 겸직 관련 결격 요건(2 개 법인까지 겸직 가능)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상시적으로 사외이사들의 겸직 여부에 대한 현황을 개별적으로 이사들에게 확인하여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직	겸직현황			
				겸직기관	겸직 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차재연 (감사위원장)	2022. 1. 4.	2025 년 정기주총일	-	-	-	-	-
김상택 (감사위원)	2022. 1. 4.	2025 년 정기주총일	現)서울보증보험 비상임경영고문	-	-	-	-
최춘석 (감사위원)	2022. 1. 4.	2025 년 정기주총일	-	-	-	-	-

나.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

당사는 이사회 개최 7 일전에 이사회 개최 일정 및 세부 안건 내용을 통보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전 실무 담당부서에서 직접 사전 설명을 하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 및 요청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외이사는 안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 사외이사들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 정책 및 구체적 운영 현황

(i)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적·물적자원 제공 절차, 구체적 제공 현황

당사는 회사 내 사외이사 전담 지원 기능을 ESG 지원부에 부여하여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들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이사들이 해당 안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를 위한 직무관련 주요 역할 및 법적 책임에 증진시키고자 2021 년 6 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관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2 년 하반기에는 당사의 생산공장을 현장 방문하여 생산라인 투어 및 제품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 받을 예정입니다.

(ii)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정 여부 등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18 조에 따라 주관부서인 ESG 지원부에 이사회 지원 전담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부서들에도 다수의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담당 직원들은 상위 직급자의 관할 하에 이사회 실무 운영, 신입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 소개,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 보고 및 설명,

필요한 경영정보의 제공 및 발송,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i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여부 및 그 내역

[사외이사만 참여한 회의 개최 내역]

(기준일 : 2021. 1. 1. ~ 2022. 5. 31.)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 전체사외이사	회의 사항	비고
1 차	임시	2022. 2. 8.	3/3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참고)[사외이사 교육 실시 현황 (감사위원회 교육 별도)]

(기준일 : 2021. 1. 1. ~ 2022. 5. 31.)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전체 사외이사	주요 교육내용
2021. 6. 1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3/3	사외이사를 위한 직무 관련 주요 역할 및 법적 책임, 상장회사 관련 이슈 해설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활동 및 교육 추가 진행예정('22년 하반기 예정)

1)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 개최여부와 그 내역

당사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회의 외에,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회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외이사들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개최 시, 사외이사들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경영활동 전반에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설명

상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전담 조직(ESG 지원부)을 마련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외이사의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지 여부 및 평가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1 년 기준 지배구조의 변화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이사회 의 개최횟수,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외이사와 이사회에 대한 평가는 당사의 이사회와 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공고히 한 후 진행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

(i)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는 보수 관련 정책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 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기본급여 외에 성과급 등의 별도 보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평가 결과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상수준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있으며, 보수 및 산정 방식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사외이사 보수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는 없습니다.

[사외이사 보수 및 1인당 보수내역]

(기준일 : 2022. 1. 1. ~ 22. 3. 31.,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²³	1인당 평균보수액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감사위원회 위원	3	44	15

(i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수량, 행사조건(성과 연동 여부 포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당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게 되거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사외이사 보수의 적정성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 업계 평균 보수 등을 참고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과 평가에 따른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²³ 보수총액은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입니다.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i) 정기이사회 관련 규정 현황

당사는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 및 산하 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이사회 권한 소집 의상 선출 결의 방식 및 회의 장소 위원회 구조 등에 대한 큰 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과 위원회 규정은 상기 항목의 상세 내용 특히 권한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이사회 개최 내역]

(기준일 : 2021. 1. 1. ~ 2021. 12. 31.)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정원
	구분	내용					
1 차	결의 사항	제 48 기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1. 2. 5.	2021. 1. 28.	8/8
		대표이사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2 차	결의 사항	1 호 의안 : 제 48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승인의 건	가결		2021. 2. 26.	2021. 2. 18.	8/8
		2 호 의안 : 고문 위촉 승인의 건	가결				
		3 호 의안 : 이사의 경업 승인의 건	가결				
		4 호 의안 : 자기거래 승인의 건	가결				
		5 호 의안 : 이사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	가결				
		6 호 의안 : 산업안전보고법 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 건	가결				

		7 호 의안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의 건	가결				
3 차	결의 사항	1 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정기	2021. 3. 19.	2021. 3. 11.	8/8
		2 호 의안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의 건	가결				
4 차	결의 사항	1 호 의안 : 제 49 기 1 분기 결산 보고 및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1. 5. 7.	2021. 4. 30.	8/8
		2 호 의안 :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가결				
		3 호 의안 : 이사회 산하 위원회 명칭 및 위원 구성 변경의 건	가결				
		4 호 의안 :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의 건	가결				
5 차	결의 사항	1 호 의안 : 제 49 기 2 분기 결산 보고 및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1. 8. 13.	2021. 8. 5.	8/8
		2 호 의안 : 상해판매법인 대여금 사용 용도 추가의 건	가결				
6 차	결의 사항	1 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1. 10. 28.	2021. 10. 20.	8/8
		2 호 의안 :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7 차	결의 사항	1 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1. 11. 22.	2021. 11. 14.	7/8
		2 호 의안 : ㈜한샘넥서스 주식 매입 승인의 건(자기거래 승인의 건)	가결				
		3 호 의안 : ㈜한샘도무스 주식 매입 승인의 건(자기거래 승인의 건)	가결				
		4 호 의안 : Hanssem Corporation(미국법인) 주식 매도 승인의 건(자기거래 승인의 건)	가결				
		5 호 의안 : 원서동 부동산 및 동산 매도 승인의 건(자기거래 승인의 건)	가결				
		6 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가결				
		7 호 의안 : 주주환원정책 승인의 건	가결				
8 차	결의 사항	1 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변경 의 건(임시주총 소집 일자 및 안건 등 변경)	가결	정기	2021. 11. 25.	2021. 11. 17.	7/8
9 차	결의 사항	1 호 의안 : 2021 년도 특별 성과격려금 지급의 건	보류	정기	2021. 12. 21.	2021. 12. 13.	7/8

(기준일 : 2022. 1. 1. ~ 2022. 5. 31.)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 차	결의	1 호 의안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22. 1. 4.	2021. 12. 27.	7/7

	사항	2 호 의안 : 대표집행임원 선임의 건	가결				
		3 호 의안 : 고문위촉 승인의 건	가결				
		4 호 의안 : 2021 년도 특별 성과격려금 지급의 건	가결				
		5 호 의안 : 중국 소주생산법인 지급보증기간 연장의 건	가결				
	보고 사항	2022 년 이사회 연간 운영일정 보고	보고				
2 차	결의 사항	1 호 의안 : 제 49 기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2. 2. 8.	2022. 1. 31.	7/7
		2 호 의안 : 집행임원 선임의 건	가결				
		3 호 의안 : 대표집행임원 선임의 건	가결				
		4 호 의안 : 2022 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가결				
		5 호 의안 : 최고안전책임자(CSO)선임의 건	가결				
		6 호 의안 : 이사회 규정 변경 승인의 건	가결				
		7 호 의안 : 위원회 규정 변경 승인의 건	가결				
		8 호 의안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승인의 건	가결				
		9 호 의안 : 임원인사관리규정 변경 승인의 건	가결				
		10 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의 건	가결				
	보고 사항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2022 년 사업계획 및 1 월 결산 보고의 건					
		외부감사인 변경의 건					
		임원배상책임보험 신규계약 체결의 건					
2022 년 이사회 및 위원회 일정 수정의 건							
3 차	결의 사항	1 호 의안 : 전자투표제 도입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2. 2. 24.	2022. 2. 16.	7/7
		2 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승인의 건	가결				

		3 호 의안 : 이사 및 집행임원 겸업 승인의 건	가결				
	보고 사항	유휴자산 매각절차 개시의 건	보고				
		이사회 일정 변경의 건					
4 차	결의 사항	1 호의안 :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2. 3. 14.	2022. 3. 6.	7/7
		2 호 의안 : 영업보고서 수정 승인의 건	가결				
5 차	결의 사항	1 호 의안 : 수정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2. 3. 24.	2022. 3. 16.	7/7
		2 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가결				
		3 호 의안 : 자문위촉계약 체결 및 이행 승인의 건	가결				
		4 호 의안 : 최고안전책임자(CSO)변경의 건	가결				
		5 호 의안 : 집행임원 선임과 이를 위한 선임계약 체결 및 이행 승인의 건	가결				
		6 호 의안 : 집행임원 보수 승인의 건	가결				
	보고 사항	이사회 일정 수정의 건	보고				
6 차	결의 사항	1 호 의안 : 주식회사 한샘 준법통제기준 개정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2. 4. 14.	2022. 4. 6.	6/7
	보고 사항	중장기 사업계획 보고의 건	보고				
		22 년 1 분기 개별기준 잠정 실적 보고의 건					

(iii) 사전에 회의일정을 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는지 여부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이사회 개최 7 일전에 이사회 개최 일정 및 세부 안건 내용을 통보하고 있으며, 회의일정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 정기적 개최 여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이사회는 월 평균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작성·보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녹취록 또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록은 이사회사무국의 책임 하에 사내 보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이사 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재직했던(재직중인)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및 최근 3 개 사업연도 동안 재직한 개별이사의 최근 3 개 사업연도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기준일 : 2021. 1. 1. ~ 2022. 5. 31.)

구분	회차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8 차	9 차	10 차	11 차	12 차	13 차	비고
	개최 일자	2021. 2. 5.	2021. 2. 26.	2021. 3. 19.	2021. 5. 7.	2021. 8. 13.	2021. 11. 22.	2021. 11. 25.	2021. 12. 21.	2022. 1. 4.	2022. 2. 8.	2022. 2. 24.	2022. 3. 14.	2022. 4. 14.	
사외 이사	정일영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3 차사임
	신태균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9 차사임
	전재훈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9 차사임
	박종현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9 차사임
	차재연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9 차선임
	김상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9 차선임
	최준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9 차선임
사내 이사	조창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불참	불참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9 차사임
	강승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9 차사임
	이영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9 차사임
	안흥국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9 차사임
	최철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9 차사임
기타 비상무 이사	이해준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9 차선임
	송인준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9 차선임
	김정균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9 차선임
	박진우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9 차선임

[최근 3 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성명	구분	재직 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 개년 평균	최근 3 개년 ²⁴			최근 3 개년 평균	최근 3 개년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정일영	사외	2017. 3. 17. ~ 2022. 1. 4.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신태균		2020. 3. 20. ~ 2022. 1. 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오윤택		2021. 3. 18 ~ 2020. 3. 21	100.0	-	100.0	100.0	100.0	-	100.0	100.0
전재훈		2021. 3. 19. ~ 2022. 1. 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박종현		2021. 3. 19. ~ 2022. 1. 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창걸	사내	2003. 3. 14. ~ 2022. 1. 4.	87.0	6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승수		2010. 3. 26. ~ 2022. 3. 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영식		2010. 3. 26. ~ 2022. 3. 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안흥국		2016. 3. 18. ~ 2022. 2. 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최철진		2020. 3. 20. ~ 2022. 1. 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²⁴ 최근 3 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 으로 표시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 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주요 역할, 구성 현황

당사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 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그 외의 위원회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각 위원회 별 주요 역할 및 구성 현황의 경우 앞서 기술된 세부원칙 4-①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감사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를 사외이사로 구성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법적 필수 설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의 경우 정관 및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3 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 위원회는 2 인의 이사 중 1 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보상위원회는 2 인의 이사 중 1 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4 인의 이사 중 3 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는 2 인의 이사 중 1 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각 위원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정관과 규정에 의거 설치 및 조직되었으며, 각 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13 조에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 13 조]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나. 위원회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여부에 관한 설명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감사위원회의 경우 세부원칙 9-②에서 기재)

[ESG 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기준일 : 2019. 1. 1. ~ 2022. 5. 31.)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	2021. 8. 13.	4/4	보고	1 호 의안 : 한샘의 ESG 현황 및 중장기 중점 추진 과제, ESG 위원회 운영안 2 호 의안 : ESG 성과 지표 책임 및 유관부서 등 전사 성과 지표 반영 3 호 의안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현황 관리 영역 협력사 확대 4 호 의안 :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5 호 의안 : 여성이사 선임 6 호 의안 : 집중투표제 · 전자투표제 도입	보고
2	2022. 5. 12.	2/2	결의	1 호 의안 : 22 년 ESG 목표 및 핵심추진 과제 승인의 건 1 호 보고 : 21 년 ESG 평가 결과 및 핵심 과제 보고의 건 2 호 보고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방향 보고의 건 3 호 보고 : 국제이니셔티브 가입 보고의 건 4 호 보고 : 분기배당 보고의 건	가결

[ESG 위원회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기준일 : 2019. 1. 1. ~ 2022. 5. 31.)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평균	최근 3개년 ²⁵		
			2021	2020	2019
사외	신태균	100.0	100.0	-	-
사외	박종현	100.0	100.0	-	-
사내	강승수	100.0	100.0	-	-
사내	이영식	100.0	100.0	-	-

²⁵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 '21 년 3 월 신설되어, '21 년은 개최내역 없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기준일 : 2019. 1. 1. ~ 2022. 5. 31.)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	2022. 2. 24.	4/4	결의	1 호 의안 : 신규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근 3 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기준일 : 2019. 1. 1. ~ 2022. 5. 31.)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 개년평균	최근 3 개년		
			2021	2020	2019
사외	신태균	100.0	100.0	-	-
사외	박종현	100.0	100.0	-	-
사내	강승수	100.0	100.0	-	-
사내	이영식	100.0	100.0	-	-

[투자심의위원회]

(기준일 : 2019. 1. 1. ~ 2022. 5. 31.)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	2021. 4. 27.	3/3	결의	1 호 의안 : 부산 물류센터 건물 신축의 건 2 호 의안 : 의정부 물류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	가결
2	2021. 11. 17.	2/2	결의	1 호 의안 : (주)한샘넥서스 주식 매입의 건 2 호 의안 : (주)한샘도무스 주식 매입의 건 3 호 의안 : Hanssem Corporation(미국법인) 주식 매도의 건 4 호 의안 : Hanssem Inc. (일본법인) 주식 매입의 건	가결

				5 호 의안 : 원서동 부동산 및 동산 매도의 건 6 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3	2022. 2. 8.	2/2	결의	1 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의 건	가결
4	2022. 3. 24.	2/2	결의	1 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가결
5	2022. 5. 12.	2/2	결의	1 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가결

[투자심의위원회 최근 3 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기준일 : 2019. 1. 1. ~ 2022. 5. 31.)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 개년평균	최근 3 개년		
			2021	2020	2019
사외	신태균	100.0	100.0	-	-
사외	박종현	100.0	100.0	-	-
사내	강승수	100.0	100.0	-	-
사내	이영식	100.0	100.0	-	-

4. 감사기구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
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한 설명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정관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는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출기준의 주요 내용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관련법령 등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충족(3명)	상법 제415조의 2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	충족(전원 사외이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충족(차재연)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
감사위원 대표는 사외이사	충족(차재연)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
그밖의 결격 요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충족(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 11 제3항

(i) 내부감사기구 구성·선임 현황,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현황

[감사위원회 위원 경력 및 자격 현황]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	--------------------	----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차재연	前) KT 에스테이트 경영기획총괄 부사장(CFO/등기이사) 前) BC 카드 경영기획총괄 전무(CFO) 前) KT 비서실 재무담당/그룹전략담당 상무 前) KT 재무실 자금담당 상무 前) KT Corporate Center(기획부문) 그룹전략담당 상무(보) 前) BC 카드 PMI(Post Merger Integration) 長	회계/ 재무 전문가
위원	사외이사	김상택	現) 서울보증보험 비상임경영고문 前) 아시아보증, 신용보험협회(AGCIA) 협회장 前)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사장 前) KCB 비상무이사 前) 서울보증보험 경영지원총괄 전무이사 前) SGI 신용정보 비상무이사 前) 서울보증보험 기획부문, 구상부문 상무 前) 서울보증보험 강서지역본부 본부장 前) 서울보증보험 증장기발전전략 TF 이사	
위원	사외이사	최춘석	前) 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이사 前) 롯데마트 상품본부장, 판매본부장	

(ii)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후보자 선정 요건, 상근감사의 겸직 허용 여부 등)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 7 조 제 2 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 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위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는 규정 요건을 상회하여, 감사위원 3 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선정 시, 회계, 재무, 리스크관리, 경영기획 등 관련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여 감사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에 관한 설명

(i)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규정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는 감사위원의 구성, 자격요건, 직무와 권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내부회계관리규정에도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진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 5 조 감사위원회의 주요 권한과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권한>

1. 이사, 집행임원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이사 및 집행임원의 보고 수령
6. 이사 및 집행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7. 이사 및 집행임원과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자,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9.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0.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1. 외부감사인의 선정

(ii)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현황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시행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 교육을 보고서 제출일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내부회계 관리 규정 제 12 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연 1 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iii)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절차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을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iv)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조직,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책임자 직급, 인원, 역할, 구성원의 전문성,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보고 체계 등)

감사위원회 활동 지원 및 내부 감사업무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당사는 감사팀을 두고 있으며, 감사팀은 내부감사 업무 및 내부통제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대표집행임원의 하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	직원수	직위	주요 활동
감사팀	7명	차장 1명, 과장 2명, 대리 4명	준법윤리지수(내부통제) 점검 및 평가 동반성장정책 수립 및 개선 등

(v) 기업이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정도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진 그리고 부서장, 관계인에게 아래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요구>

1. 중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2. 정물일치 확인을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또한 제5조4항에 따라 언제든지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i) 보수정책* 운영 현황,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등 현황

*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구별하여 보수내용이나 보수총액 등이 다른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정책을 의미함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전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업무독립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조직을 마련하여 감사위원회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조직 및 감사위원간 수시 교류를 통해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 및 1 인당 보수내역]

(기준일 : 2022. 1. 1. ~ 2022. 3. 31.,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²⁶	1 인당 평균보수액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감사위원회 위원	3	44	15

다.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당사는 상기와 같은 절차 등으로써,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²⁶ 보수총액은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입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

(i)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실시 내역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1년 3월 19일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2021년 총 3회, 2022년 상반기 3회 개최되었으며, 매 개최 시 감사위원 3인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6건, 보고사항 18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대표집행임원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고 그 적정성을 검토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1년 12월 31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 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 하였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i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등

* 대면 또는 화상 회의만 해당 (서면보고 제외)

[2021년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기준일 : 2021. 1. 1. ~ 2021. 12. 31.)

회차	개최 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21. 4. 27.	3/3	결의 사항	1호 의안 : 위원장 선임 - 전재훈 사외이사 2호 의안 : 이사회에 부의할 감사위원회 규정의 심의 및 이사회 상정 의결 3호 의안 : 감사위원회의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가결
			보고 사항	4호 의안 : 내부감사부터 현황 및 연간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 5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계획 보고 6호 의안 : 제49기 1분기 재무제표 보고 7호 의안 :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	
2차	2021. 8. 11.	3/3	보고 사항	1호 의안 : 내부감사의 2분기 감사 활동에 대한 보고 2호 의안 :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3호 의안 : 제49기 2분기 재무제표 보고 4호 의안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	보고
3차	21. 11. 17.	3/3	보고 사항	1호 의안 : 내부감사의 3분기 감사 활동에 대한 보고 2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보고 3호 의안 : 제49기 3분기 재무제표 보고 4호 의안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	보고

[2022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활동]

(기준일 : 2022. 1. 1. ~ 2022. 5. 31.)

회차	개최 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22. 2. 22.	3/3	결의 사항	1호 의안 : 제4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 2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 3호 의안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 승인	가결
2차	2022. 2. 28.	3/3	결의	1호 의안 : 위원장 선임 - 차재연 사외이사	가결
			보고 사항	2호 의안 : 내부감사의 21년 감사활동에 대한 보고 3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보고 4호 의안 : 제49기 재무제표 보고	

				5호 의안 : 외부감사인 변경 보고 6호 의안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보고	
3차	2022. 3. 14.	3/3	결의 사항	1호 의안 : 제4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수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승인	가결

[2021년 감사위원회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기준일 : 2021. 1. 1. ~ 2021. 12. 31.)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개최일자	2021. 4. 27.	2021. 8. 11.	2021. 11. 17.
사외	전재훈	출석	출석	출석
	박종현	출석	출석	출석
	최철진	출석	출석	출석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출석 현황]

(기준일 : 2022. 1. 1. ~ 2022. 5. 31.)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개최일자	2022. 2. 22.	2022. 2. 28.	2022. 3. 14.
사외	차재연	출석	출석	출석
	김상택	출석	출석	출석
	최춘석	출석	출석	출석

[최근 3개년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²⁷		
			2021	2020	2019
사외	전재훈	100.0	100.0	100.0	-
	박종현	100.0	100.0	100.0	-
	최철진	100.0	100.0	100.0	-

²⁷ 최근 3개년중 해당 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 '-'로 표시

(iii) 감사절차, 회의록·감사록의 기록·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에 관한 내부규정 존재 여부와 그 내용

정관 제52조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문서 보존에 대한 내용이나 주주총회 보고절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내부규정은 없지만 상법 등에 따라 회의록, 감사록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장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정책

(i)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기준·절차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28조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사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ii)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횟수 및 각 회의에서의 논의사항(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평가, 감사계획, 감사시간 등)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의거하여 2022년 2월 8일 1차 감사위원회 회의에 따라 제50기(2022. 1. 1. ~ 2022. 12. 31.)부터 제52기(2024. 1. 1. ~ 2024. 12. 31.)까지 금융감독원의 지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안진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22년 2월 개최한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과 핵심감사 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iii)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여부 및 그 내용

감사위원회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전에 정해놓은 감사 보수와 시간, 인력 등의 계약 사항이 실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사인의 업무 수행 내역을 매년 평가해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 시 계획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이 감사 계약에 따라 준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감사 업무계획에 따라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업무가 충실하게 이행되었고, 회사의 회계 정책에 대한 외부기관 자문 요청 및 이에 대한 검토가 계획대로 수행되었으며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분기별로 수행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2022년 3월 개최한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및 승인 받았습니다.

(iv)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선정 사유 및 관련 비용 지급 내역 (감사 비용 및 비감사 자문용역 금액)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등에서 정한 독립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는 관계법령 등에서 금지되지 않은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 가능하며, 외부감사인이 제공 가능한 비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사전에 감사위원회와의 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비감사업무의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의 최근 3년간 감사용역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백만원)	총소요시간
2021년	삼일회계법인	분기·반기검토, 중간감사, 재고실사, 금융실사, 기말감사, 연결감사, 내부회계 설계평가, 운영평가	510	4,905시간

2020년	삼일회계법인	분기·반기검토, 중간감사, 재고실사, 금융실사, 기말감사, 연결감사, 내부회계 설계평가, 운영평가	480	4,994시간
2019년	삼일회계법인	분기·반기검토, 중간감사, 재고실사, 금융실사, 기말감사, 연결감사, 내부회계 설계평가, 운영평가	340	3,440시간

이상과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선임하였고, 외부감사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독립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사가 현 외부감사법인(안진회계법인)을 향후 3 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 받은 이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선임하였고, 외부감사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독립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 소통하여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실태에 관한 설명

(i)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 협의 여부
* 대면 또는 화상 회의만 해당(서면보고 제외)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와 감사계획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협의 내용(연간 감사계획,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치 평가 방법 등) 및 내부감사업무에의 반영 절차

2021년 회계연도 관련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회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방식	주요논의내용
2021. 4. 27.	대면회의	2021년 회계감사 일정 계획,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2021. 8. 11.	대면회의	반기 중점 검토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2021. 11. 17.	대면회의	분기 중점 검토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선정 및 감사절차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상황,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2022. 2. 8.	대면회의	핵심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서면회의 제외

(iii) 외부감사인이 감사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확인한 중요사항을 서면, 대면회의 등의 방식을 통해 당사의 감사위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통보 시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 출석요구, 외부전문가 선임, 위반사실 조사, 대표집행임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v)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 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외부감사인명 및 제출 시기

2021년 별도기준 감사전 재무제표(2022. 1. 24),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2022. 1. 28.)를 각각 정기주주총회(2022. 3. 23.) 8주전(6주전 기준) 및 8주전(4주전 기준)에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5. 기타 주요 사항

당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담당 조직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계획들을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mpany.hanssem.com/sustainability_management/sustainability_management/vision_strategy.do)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필수 기재)

※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지표 15개를 선정, 준수 여부를 공개

구분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설명 ²⁸	(직전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²⁹		비고
		O	X		O	X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세부원칙 1-①	-	-	-
	② 전자투표 실시*	O		세부원칙 1-②	-	-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세부원칙 1-②	-	-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O		세부원칙 1-④, ⑤	-	-	-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X	세부원칙 3-②	-	-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세부원칙 3-③	-	-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X	세부원칙 4-①	-	-	-
	⑧ 집중투표제 채택		X	세부원칙 4-③	-	-	-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세부원칙 4-④	-	-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O		세부원칙 5-①	-	-	-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X	세부원칙 9-①	-	-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세부원칙 9-①	-	-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세부원칙 9-①	-	-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X	세부원칙 10-②	-	-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O		세부원칙 9-①	-	-	-

※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²⁸ 필요 시 별도 페이지에 상세설명 기재

²⁹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최초로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 ‘-’으로 기재

< 핵심원칙별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

- ① 주주총회 2주전 공고 : 소집공고일 3/8, 주총개최일 3/23
- ② 전자투표 이사회 결의, 계약체결, 주총 반영
- ③ 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집중일 이외 날짜인 3/23에 정기주주총회 개최
- ④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는 배당정책을 공시함 ('22.11.22 공시)
 - 2022년 1분기부터 분기배당 예정
 - 최소 연간 배당성향(Dividend Payout Ratio) 50%로 상향
 - 단, 연간 FCF(Free Cash Flow)가 당기순이익을 초과시, 배당성향 50% 초과 배당 가능
- ⑤ 당사는 향후 인사 담당 부서 주관 하에 체계적인 승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교한 평가체계를 통해 성과 및 역량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함께 역량 있는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는 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주도할 최고경영자 후보를 양성할 계획임
- ⑥ 리스크 관리, 준법 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 리스크관리 정책 실시
- ⑦ 당사는 2021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의결을 통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집행임원이 분리됨으로써,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집행임원과 이사회 의장은 분리된 상태이나,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음
- ⑧ 당사는 정관 제35조에 의거 현재 집중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소수주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보장되고 있음. 또한 단기적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현재로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계획이 없음
- ⑨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성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회사의 윤리규범 등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당사 윤리경영실을 운영함으로써 징계의 일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동일 유형의 사고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음
- ⑩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당사에 선임되기 전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할 경력 없이, 현재 재직 중인 당사 사외이사 중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여 장기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음

- ⑪ 당사는 감사위원회 교육을 보고서 제출일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관련 규정의 제·개정 사항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⑫ 감사위원회 활동 지원 및 내부 감사업무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팀을 두고 있으며, 감사팀은 내부감사 업무 및 내부통제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운영하고 있음. 감사팀은 대표집행임원의 하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⑬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정관 제48조 1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함.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음
- ⑭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감법 시행령 8 조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와 감사계획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으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경영진의 참석 하에 협의하고 있음. 향후 내부 상황에 맞춰 경영진 참석 없이 관련 회의가 적절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예정
- ⑮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진 그리고 부서장, 관계인에게 아래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끝.